



2023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이** 하는 가치

KBIZ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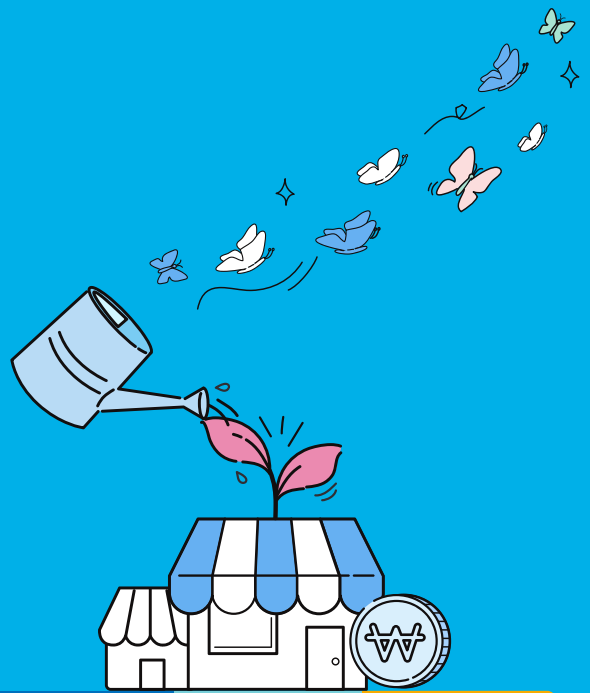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이 하는 가치

2023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KBIZ 중소기업중앙회



Contents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2023

I.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2
II. 세부절차(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5
III. 조달청 위탁구매 안내	9
IV. 제도 개선 경과	12
[참고 1] 관련 법령	14
[참고 2]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	19
[참고 3] 공동상표 등록현황	21
[참고 4] 기관별 제도활용 실적	22
[참고 5] 제도활용 우수사례	23
[참고 6] 중소벤처기업부 제도활용 독려 공문	24

I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 (개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①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②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가능

▶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구매기관	•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추천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2억원 미만)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4조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 공동사업

▶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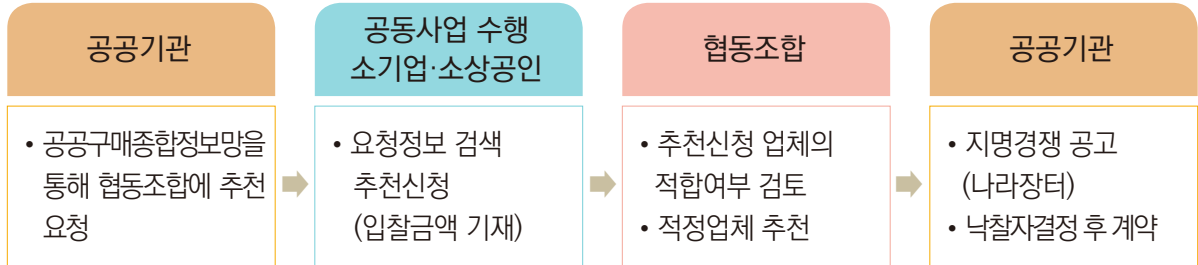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사업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③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 ⑤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세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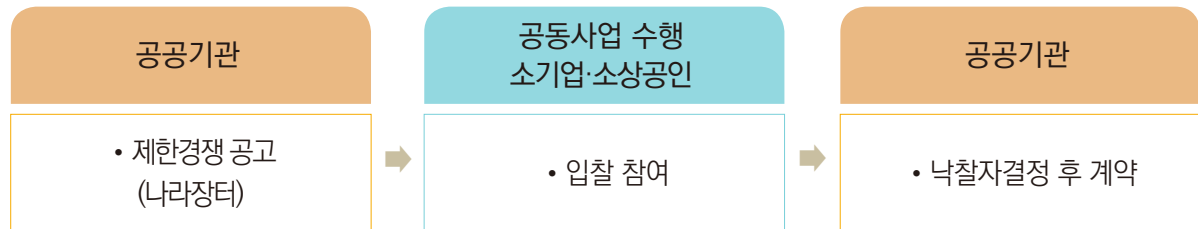
공동사업명	사업소개
단체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하는 기술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 • 협동조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표준에 의해 업체들을 심사하여, 일정 자격 (설비·국제기준 부합 규정 보유 등)을 갖추고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 발급 및, 주기적 사후관리 심사 실시
특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특허권을 적용하여 제품화하고 특허권자의 기술 이전을 통해 참여 기업이 우수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조합에서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해당업체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며 특허 적용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사후관리 등을 실시
공동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자체 개발 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개발한 공동상표(특허청 상표등록 필요) * 기존 중기유통센터 통한 공동상표도 인정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공통애로기술개발 포함)을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을 소기업·소상공인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공유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
협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R&D·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전문기업이 핵심 역량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상호간 협력하여 참여기업 간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 지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구매방식

① 지명경쟁



② 제한경쟁



○ 제도활용 장점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공동사업 및 사후관리 수행으로 우수품질제품 구매 가능
수익계약 부담완화	수익계약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고품질 확보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41~4)

II 세부절차(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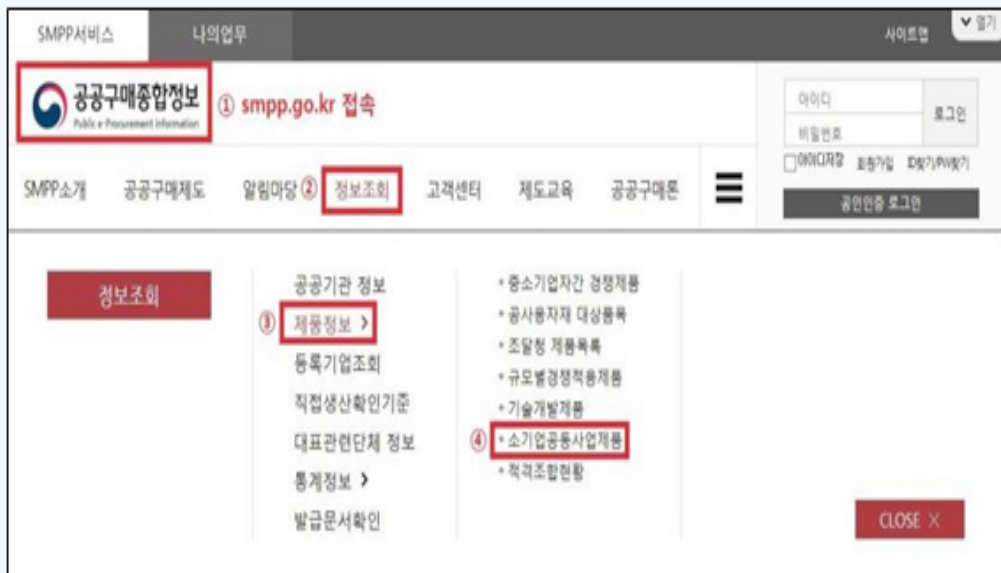
○ 지명경쟁

▶ 추천방식

- (선착순 추천방식) 협동조합은 추천신청 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만큼 적정업체를 추천
- (랜덤 추천방식) 협동조합에서 추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 업체를 제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업체 수의 3배수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추천 대상업체를 최종 선정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확인

- ①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② '정보조회' → ③ '제품정보' →
- ④ '소기업공동사업제품'



▶ 세부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및 로그인



(2) ① '나의업무' → ② '공동사업제품추천' → ③ 추천희망 공동사업명 클릭 → ④ '우선조달요청등록'



(3) 추천요청 기관정보, 공고명 입력

특허개발지원제품 우선조달요청등록

[-이용안내] 상세내용 열기

◆ 소액수의계약 대상 관련 나라장터 개선 안내

◆ 추천요청 기관정보

공고명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기관코드	000000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16-2		
홈페이지			
요청부서	관료지원실		
전화번호	02-2124-3246	요청자명	최가람

(4) 세부품명, 품목별 추정가격 입력(추정가격은 업체별 입찰금액의 기초가 되므로 되도록 기초금액에 가깝게 작성 필요)

경장제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경장제품	2410171201	볼트컨베이어
경장제품	3020170401	정정실
경장제품	4010170901	공기조화기
경장제품	4010171001	올북동식냉동기
경장제품	4010171201	스크루냉동기
경장제품	4010171501	환온환습기
경장제품	4010190201	정습기
경장제품	4016150201	원터필터
경장제품	4016160501	탈취기
경장제품	4016170101	환심분리기
경장제품	4710150102	활성탄공급장치

(5) 추천요청 협동조합 선택(해당 제품 추천 가능한 업체 자동검색)

(6) ① 실수요기관 선택·입력 → ② 추정가격 합계 자동입력 → ③ 추천기한(수요 기관에서 최종 추천받고자 하는 일자) 입력 → ④ 추천요청 업체 수 입력(5개 이상) → ⑤ 첨부파일(시방서, 내역서 등) 첨부 → ⑥ 기타 요구사항 입력 → ⑦ 등록

※ 추천요청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시행령 제2조의2

○ 제한경쟁

- ▶ 나라장터에 공고 입력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구매 진행

[입찰참가자격 작성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모두)

- (1) ①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물품” 클릭 → ② “입찰공고” 클릭 → ③ “입찰공고 입력” 클릭 → ④ “신규입력” 클릭

- (2) 조합추천 이후 ‘지명경쟁입찰’ 시 : “지명(총액)” 클릭, ‘제한경쟁입찰’ 시 : “제한(총액)” 클릭

III 조달청 위탁구매 안내

○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2억원)미만 에 한해 가능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구매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 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 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 (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 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 기술혁신 촉진사업 ⑤ 우수단체표준 * 용역의 경우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①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품목이면서 ②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 세부 활용방법 안내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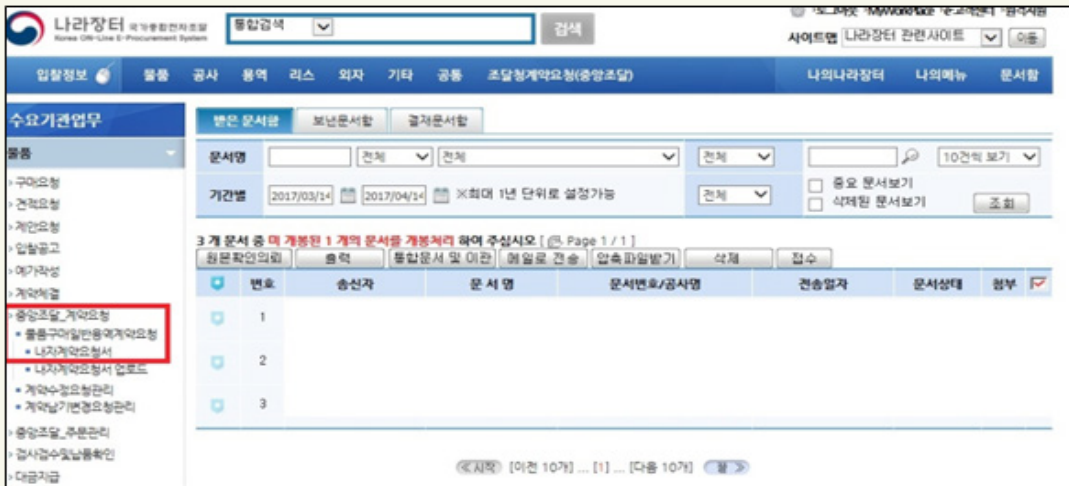
(1)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및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물품” 클릭



(3) ① “중앙조달_계약요청” 메뉴 클릭 → ② “물품구매일반용역계약요청” 클릭 → ③ “내자계약요청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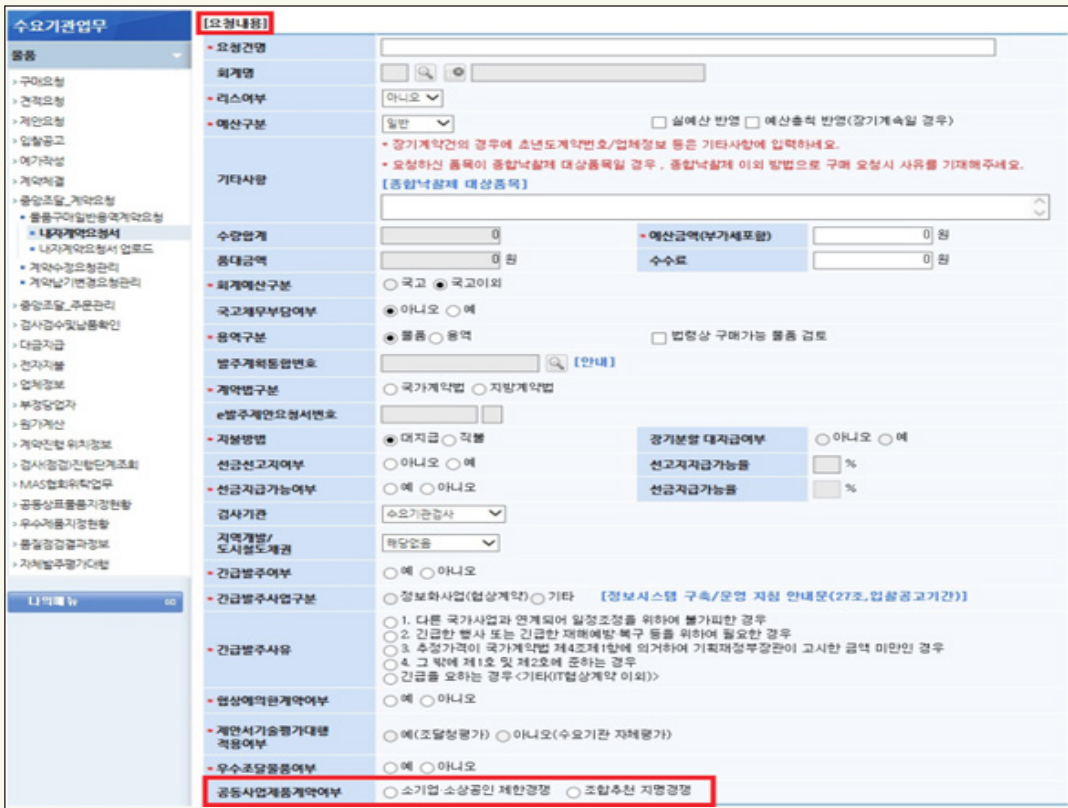
(4) “작성” 클릭하여 내자계약요청서 작성 시작



(5) 기타내용 입력 후 “계약방법”에서, “지명경쟁”(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제한경쟁” 선택



(6) “요청내용” 작성 중 “공동사업제품계약여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또는 “조합추천 지명경쟁” 중 필수 택 1하여 작성하고 기타사항 작성 후 최종 “등록” 저장 클릭



● 문의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

조달청 위탁구매 안내

IV 제도 개선 경과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 근거 마련('16.11.29 개정)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11호 생략)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제도 세부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16.10.13)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개정

○ 조달청, 제도 활용 위한 구매처리지침 개정

- 조달청 통한 위탁구매 가능('17.1.11)

- 우수단체표준 대상사업 구매 상한 확대(50억원 미만)('19.6.28)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①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품목이면서 ②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22.12.27)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도 활용근거 마련(‘18.3.16 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에 제도 활용 근거 마련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1~8호 생략)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참고 1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4조(구매 증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p>제1조의2(공동사업)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 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p> <p>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 경쟁입찰</p>	<p>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p> <p>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p>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p>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⑤ 공동사업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 능력,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공공기관의 추천요청사항 등 추천에 필요한 요건에 맞는 기업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조 소기업 등의 신청 순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한 종료일까지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업체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소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 업체가 3개 또는 4개 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수 모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개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없다.

3.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상위신청자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제외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추천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세부품목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매년 3월15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중앙회장은 각 조합이 제출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조합별, 업체별, 품목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 후 이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추천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⑧ 중앙회장은 확정된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제품 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한 조합 또는 제조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라 추천 및 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⑩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동사업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 ⑪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4. 위법 또는 부당 행위에 따른 추천·신청 제한]

구 분	위법 또는 부당행위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별 추천 및 신청 제한기간			비 고
		1회	2회	3회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한 업체를 추천한 경우 - 적격한 업체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기한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추천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2년	영구 퇴출	- 해당 조합 별 제한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의 추천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기타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청·추천·입찰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년	2년	영구 퇴출	- 해당 업체 별 제한

* 위법 또는 부당행위 횟수 산정은 최종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근 5년간 위반한 횟수를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1~8호 생략)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0호 생략)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11호 생략)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참고 2

공동사업제품 등록 현황 ('23.6.30. 기준)

공동사업	조 합	제 품	
단체표준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41개	
	콘크리트(연)	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등 3개	
	프라스틱(연)	프라스틱계맨홀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경관포장(조)	도막형바닥재, 흙콘크리트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실물모형	
	공원시설업(조)	퍼걸러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금속패널(조)	금속제패널	
	도로교통시설물(조)	신호등주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석재(조)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석회석(조)	석회비료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전시문화(조)	실물모형및전시물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20개	
	주택가구(조)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철망(조)	금속돌망태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활성탄소(조)	활성탄	
	특허권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6개
		프라스틱(연)	프라스틱계맨홀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공동사업	조합	제품	
특허권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방송통신(조)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등 5개	
	여과기(조)	공기여과기	
	유무선통신(조)	통합배선반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전자(조)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조명(조)	융복합LED가로등기구	
	환경플라스틱사업(사)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및 이음관 등 3개	
공동상표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기계(연)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2개	
	플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과학기기(조)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도자기타일(조)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보일러(조)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시계(조)	손목시계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전자(조)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정보(조)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펌프(조)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부울경신기술(사)	금속제창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엘리베이터(사)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기술혁신 촉진산업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향온향습기 등 25개

※ 조합 및 제품 신규 업데이트 현황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g.go.kr) 접속 및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메뉴에서 확인 가능

참고 3

공동상표 등록현황

조합명	세부품목	공동상표명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K OREAD 
기계(연)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KO MACHINE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알피온 알피온 DKAGREENSASH (디케이에이그린샤시)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2개	HI-PRINTING(하이프린팅) 
플라스틱(연) 및 산하 지방조합	플라스틱계맨홀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DalDave창호 DalDave창호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EQMAP(이큐맵) 
과학기기(조)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STEDI(스테디) 
도자기타일(조)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GOODTILE(굿타일) 
보일러(조)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HQB(하이퀄리티보일러) 
시계(조)	손목시계	SECRO(세크로)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WEZES(위제스) 

조합명	세부품목	공동상표명	
전자(조)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It'Sound(잇사운드) 	K elect.(케이일렉트) 
정보(조)	정보시스템개발· 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SOPRO(소프로) 	
펌프(조)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Pumpro(펌프로) 	
부울경신기술(사)	금속제창	GAGAWIN(가가윈) 	
서울경기북부 엘리베이터(사)	승객용·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6개	케이앤지 	
엘리베이터(사)	승객용·화물용 엘리베이터 등 5개	아리랑ELEVATOR 	

참고 4 기관별 제도활용 실적(2022)

No	기관명	계약금액 합계(단위:원)
1	강원도 정선군	1,827,000,150
2	강원도 인제군	1,032,000,000
3	충청북도 괴산군	871,784,930
4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선비세상사업단	869,000,000
5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총괄과	857,199,400
6	전라북도 군산시	813,444,000
7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고등학교	810,402,000
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09,000,000
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744,000,000
10	경상남도 남해군	723,047,900

- ① 조합명 :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 ② 세부품목 : 실물모형, 실물모형 및 전시물
- ③ 활용기관 : 강원도 정선군·인제군, 경상북도 영주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돼 195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연출·기획 및 콘텐츠 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20년을 시작으로 4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체표준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공공전시서비스’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조합원사들은 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해 공동사업제품 구매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2023년 6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29개이며, 이들은 4년간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수주한 계약금액은 384억원에 달한다. 2020년 39억원(12건)이었던 계약금액은 2022년 133억원(25건)으로 그 규모가 대폭 늘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또한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기존 계약제도 대비 신속한 업체 추천이 가능한 점과, 조합이 업체 추천에 관여해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 등을 제도의 큰 편리함으로 꼽는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 인증기업 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정책방향 수립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사업 우수 실무자 해외 워크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시사업 실무능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참고 6 중소기업부 제도활용 독려 공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안내

1. 평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3. 우리부는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협업사업, 공동상표, 특허, 기술혁신촉진사업, 단체표준)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달시 위 제도를 활용 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지명경쟁을 위한 조합추천 요청 방법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제43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신자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주무관 최여영

공정사부 권영재
관

기술사기 대관 0607
관 조성준

판로정책과 권경
관

일코자
 시행 판로정책과 1909 (2023-09-07) 접수 총무회계실-2838 (2023.09.08)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9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어진동) / www.mss.go.kr
 전화 044-204-7541 전송 044-204-7549 / ontheking@korea.kr / 공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만드시 유치하겠습니다."